##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6 발의연월일: 2021. 4. 16.

발 의 자:이수진・이형석・이해식

송갑석・신정훈・이규민

양향자 · 이성만 · 황운하

한준호 · 임오경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경우에도 동법 제25조제7항에 따라「민사조정법」 제35조 시효중단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분쟁조정 신청 시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 효중단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 기업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분쟁조정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 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와 그 본질 및 근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기업의 재 산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분쟁의	조정)	1	~	5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제1항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u> 준용한다.</u>